

#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2. 15(수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2. 21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2. 24(목)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 2. 24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건설과장 석명준)

가. 제안이유

- 2004. 3.11 법률 제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,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  -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  -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  -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  -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  -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○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  -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군수)
  - 평창경찰서장
  - 평창교육청교육장
  - 평창군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
  - 평창군지역 관할 소방서장
  - 평창군의 자연재난 · 인적재난 · 기반재난업무 담당과장
  - 재난관리책임기관중 평창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산하기관장
  - 평창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  -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재난업무 담당이 됨

○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(안 제6조)

-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
-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.

○ 위원회의 실무위원회(안 제7조)

-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둠
-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.

- 관계기관의 협조요청(안 제10조)
  -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.
  -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임.
-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먼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재난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부분에 따라서 위원회 사무를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,
  -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임기, 직무, 회의 및 의사 등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
  -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와 관련 조사·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재난 및 안전 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조속히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